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3가단53792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담당변호사 조경운, 김윤석

피 고 중소기업은행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
담당변호사 김용현, 김윤찬
변 론 종 결 2024. 9. 10.
판 결 선 고 2024. 10. 15.

주 문

1.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7. 4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B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의 보증의뢰를 받아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, ① 2013. 2. 22. 보증금액 450,000,000원(이후 344,250,000원으로 변경), 보증기한을 2014. 2. 21.까지(이후 2023. 2. 10.까지로 변경)로 정한 보증약정을, ② 2016. 9. 12. 보증금액 261,000,000원(이후 221,850,000원으로 변경), 보증기한을 2017. 9. 12.까지(이후 2023. 9. 8.까지로 변경)로 정한 보증약정을, ③ 2019. 2. 8. 보증금액 85,000,000원(이후 68,850,000원으로 변경), 보증기한을 2020. 2. 7.까지(이후 2023. 2. 3.까지로 변경)로 정한 보증약정을, ④ 2020. 3. 20. 보증금액 76,500,000원, 보증기한을 2021. 3. 19.까지(이후 2023. 3. 17.까지로 변경)로 정한 보증약정을, ⑤ 2020. 3. 20. 보증금액 76,500,000원, 보증기한을 2021. 3. 19.까지(이후 2023. 3. 17.까지로 변경)로 정한 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, A은 위 각 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각 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.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의 각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총 1,070,000,000원을 대출하였다.

나.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2. 11. 3. 보증사고가 발행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23. 3. 27. 중소기업은행에 682,956,4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다. 한편, A은 2022. 7. 4.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, 채권최고액 510,000,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2. 7. 4. 접수 제272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

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고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)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,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,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기한 대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,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. 7. 4.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22. 11.

3.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, ③ 실제로 원고가 2023. 3. 27.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

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증거 및 이

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A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1,853,953,091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, 그 소극재산은 적어도 7,327,447,626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된다.

1) 적극재산 : 1,853,953,091원

(단위 : 원)

구분	금액	비고
주식	225,640,000	
보험 등 장기금융상품	57,799,981	
보통예금 등	111,193,316	
부동산	1,459,319,794	
자산총계	1,853,953,091	

2) 소극 재산 : 약 7,327,447,626원

구분	금액	비고
주식	225,640,000	
보험 등 장기금융상품	57,799,981	
보통예금 등	111,193,316	
부동산	1,459,319,794	
자산총계	1,853,953,091	

채권자	채무액(단위: 원)
피고	5,008,138,903
D은행	1,192,237,801
E은행	403,070,922
F은행	324,000,000
G	100,000,000

H	300,000.00
합계	7,327,447,626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관련 법리

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. 한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).

2) 판단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A이 2022. 7. 4.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담보로 A의 중소기업금융채권에 담보한도액 524,700,000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여두었는데, A의 담보변경 요청에 의하여 위 근질권을 해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담보변경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,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A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.

나)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21. 8. 26. A에 대하여 2021. 8. 27.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에 기한 채무와 관련하여 A의 중소기업금융채권에 524,700,000원을 한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, A이 2022. 7. 4. 위 관련 예금계좌를 해지한 사실,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가액이 1,104,000,000원에 해당함에도 채권최고액 775,500,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기존의 근질권은 '2021. 8. 27.자 지급보증거래'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질권인 점, A이 관련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

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 사건 근질권에 갈음하는 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,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단순한 담보교체가 아니라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소결

따라서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정민

별지